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69호
- 나. 제 출 자 : 류명기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(안 제3조)
- 다. 지원내용(안 제4조)
- 라. 사무의 위탁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4. 12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으로 노인의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,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(안 제2조)

- 노인의 건강, 여가, 안전, 일자리 등 노인복지의 종합적 정책수립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

2) 지원대상(안 제3조)

- 노인복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규정함

3) 지원내용(안 제4조)

-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의 운영비, 각종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

4) 사무의 위탁(안 제5조)

- 본 조례안의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노인복지법

[시행 2020. 7. 8.] [법률 제17199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]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